

평창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제출자 : 평 창 군 수

평창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33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2. 4. 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2010년 10월 29일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의 개정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 중 최저 보유차고 면적이 완화됨에 따라, 생계형 영세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대상 확대

○ 개인택시, 용달화물차 ⇒ 개인택시, 용달화물차, 개별화물차(1.5톤이하)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: 붙임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관계부서승인 : 해당없음

라. 입법예고 : 2012.02.15 ~ 03.06(20일간), 제출된 의견 없음

마.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
평창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개별화물차 운송사업자 :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」 제3조제2호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최대적재량 1.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

제3조 본문 중 “운송사업자 및 용달화물자동차”를 “· 용달화물자동차· 개별화물자동차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적용대상)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운송사업자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· 2. (생략)</p> <p><신설></p> <p>제3조(차고지 설치의무 면제) 제2조에 따른 개인택시 <u>운송사업자</u> 및 <u>용달화물자동차</u>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. 단, 주차장 또는 차고지 등이 아닌 장소에서 밤샘주차한 경우 이에 따른 처분은 개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	<p>제2조(적용대상) ----- ----- --.</p> <p>1. ·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개별화물차 운송사업자</u> : 「<u>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</u>」 제3조제2호에 따른 <u>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</u>을 영위하는 <u>사업자</u> 중 <u>최대적재량 1.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</u></p> <p>제3조(차고지 설치의무 면제) --- ----- · <u>용달화물자동차 · 개별화물자동차</u> ----- ----- ----- . ----- ----- ----- .</p>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개별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중 최대적재량 1.5톤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 (제2조)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2호 (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)

3. 미첨부 사유

-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경감 및 생활안정 기여를 목적으로 차고지설치의무 면제대상에 1.5톤이하 개별화물 운송사업자를 추가하는 조례로 재정소요 추계는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음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민원봉사과장 장창규
연락처	(033) 330 - 2320

관계법령발취

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

제3조(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)법 제3조제4항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2.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: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

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

제13조(허가기준)법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기준은 별표1과 같다

[별표1]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기준(제13조관련)

업종구분	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	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	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
최저보유 차고면적	화물자동차 1대당 해당 화물자동차 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	해당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. 다만, 주사무소가 있는 특별 시·광역시·특별자치도·시 또 는 군의 주차 여건과 교통상 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최대적재량 1.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 는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 업자에게 차고지를 설치하 지 않도록 해당 지방자치단 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	화물자동차 1대당 당해 화물 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 한 면적. 다만, 주사무소가 있는 특별 시·광역시·특별자치도·시 또는 군의 주차 여건과 교통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 하여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 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차고 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.